

블로그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심의 가이드북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NOTICE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도치 않게 법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과 행정적·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의 의료기관이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현행 법령을 준수한 올바른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 1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5
-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광고 예시입니다 ————— 6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 1 블로그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 7
- 2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8
- 3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9
- 4 블로그 게시물 내용이 의료광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
- 5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12
 - 사전심의 미대상 / 대상 예시

I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가이드

- 1 블로그, 매체는 달라도 심의신청 방법은 같습니다 ————— 15

IV. 주의 사항

- 1 심의받은 블로그 게시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16
 - 2 블로그 외 SNS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19
 - 3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
-

I.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1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매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유통·전달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뜻합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의료광고를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의료광고 심의매체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① 의료인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I.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광고 예시입니다

검색어(네이버, 병원원 업종 특화소재 기본형)

+ 한의약치료 □□ 한의원

비수술 척추관절질환치료,
자동차보험진료, 추나치료,
보약처방 한00000

진료예약 교통사고 보약처방



애플리케이션(당근마켓)

가양동

퇴근 후 진료, 저녁 8시까지 :
디스크, 추나, 약침 치료
강서구 가양동 ○○한의원 · 광고
한00000



SNS(인스타그램)

akom

akom

꼼꼼하고 세심하게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원입니다.

- ✓ 공진단 처방
- ✓ 보약 처방
- ✓ 약침 치료
- * 평일 매일 야간진료
- * 주말, 공휴일 입원가능
- * 주차장 이용 가능

#강서 #가양역 #가양동 #공진단처방
#보약처방#정성가득#진료



블로그(네이버)

**통증 치료하는
○○○한의원**

서울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하는 한의원

안녕하세요 ○○○한의원 ____원장입니다.

몸에는 평소보다 많은 교통량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면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후유증 증상
 - 목과 허리가 뻣근하다.
 - 등이 갈리고 아프다.
 -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린다.
 -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 발, 다리가 붓고 저러다
 -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약치료
 - 통/약침
 - 추나
 - 한약
 - 한약 처방
 - 물리치료
 - 수침

퇴근 후 야간에도 진료하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약치료를 받으세요



SNS(유튜브)

안녕하십니까.

○○ 한의원 TV 구독자 여러분 □□□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한의원에서 진행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중,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1 "블로그"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매체를 이용할 경우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시행(2018.9.28.)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사전심의 매체가 추가된 것은 아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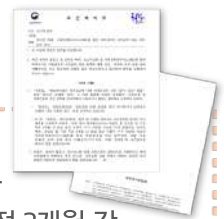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유권해석하여 전국 지자체(보건소 등)에 일괄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4.11.4.)

-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2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2025.1.16.)에 따라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블로그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 별로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5.1.16.)

-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 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3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심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기관 블로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 2024.12.30.)'

Q6 의학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학술활동이나 정보공유의 목적이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게시하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4 블로그 게시물 내용이 의료광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블로그 게시물 내용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1. 목적 2. 내용 3. 게시 형태 4.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5.1.16.)

-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 의학정보에 의료기관의 단순 정보를 추가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

의학정보와 함께 추가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 2024.12.30.)'

㉠ 다만, 의학정보 내용과 함께 제시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5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로 판단이 필요하며,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의 미대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예시)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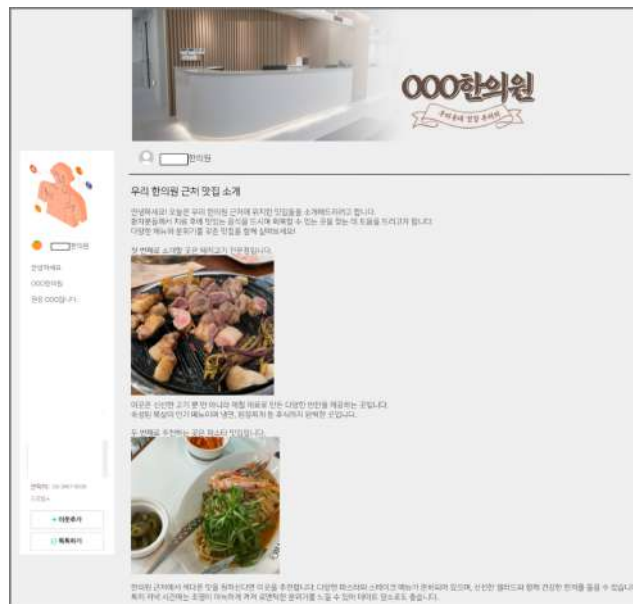
사전심의 미대상

공인된 의학정보(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로만 구성된 게시물 (예시)



사전심의 미대상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예시)



II.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가이드

사전심의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예시)



한의원

저는 10여년간 한의사로
사업을 하고자 다양한 중
요한 치료를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진료도 병행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진료 받으
실 것입니다.

수원 소재 교통사고후유증 치료하는 한의원

한의원

안녕하세요 ^^
한의원입니다.

항상에는 평소보다 많은 교통사고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한번 불행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초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차이를 하느라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남 후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발생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찾아올 수 있는 후유증 증상과 한의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
 - 복과 하리가 배근하다
 - 등이 굽고 아프다
 -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린다
 -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 말, 다리가 붓고 저리다
 -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 치료
 - 침 / 약침
 - 주사
 - 전막
 - 한약 처방
 - 물리치료
 - 부항

바쁜 일상 회복!!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받러
우리 한의원으로 오세요



한의원

야간 진료실 운영안내

평일 화, 목 저녁 9시까지

방문 및 내원하여 응급응급 분을 위해
응급, 화,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 02-1234-5678

000한의원

#교통사고 #교통사고치료 #한의원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가이드

1 "블로그", 매체는 달라도 심의신청 방법은 같습니다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매체/플랫폼은 상이하더라도 심의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d.akom.org>)를 통해
심의신청 가능하고, **포스팅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는 시안으로 심의신청 바랍니다.

의료광고 심의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모든 광고 매체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가이드를 확인 · 참고 바랍니다.

(참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와 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이미 승인된 광고를 참고했을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은 광고 시안 및
심의필번호를 첨부하여 심의신청할 경우 검토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상 의료인의 약력 및 다수의 의료인에 대한 내용 또는 입원실 등 운영하고 있는
시설 내용 표기 시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검토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이 급증하여 결과통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고려하시어 심의신청 바랍니다.

IV. 주의 사항

1 심의받은 블로그 게시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블로그 게시물 1개를 개별 광고로 판단하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은 광고 내용 외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승인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위반 오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포스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의료광고 금지 사항 관련 의료법 조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시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IV. 주의 사항

(참고)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 2024.12.30.)')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 의료인 등이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③ 거짓 광고

-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④ 비교 광고

-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며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⑤ 비방 광고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⑦ 부작용 정보 누락 위반 광고

-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며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⑧ 과장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

IV. 주의 사항

(참고)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제2판, 2024.12.30.)')

⑨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로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신거나 방송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⑪ 미심의 광고

-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

⑫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2호)

* 단,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가능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1항)

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4호)
- 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등에 관한 광고행위는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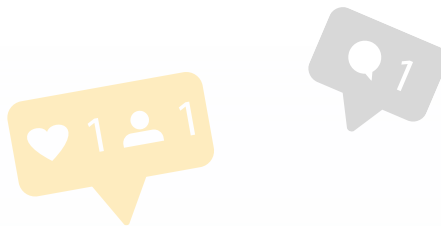
IV. 주의 사항

2 블로그 외 SNS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정의 팔로워·구독자 수와 무관하게
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 게재 시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4.11.4.)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V. 주의 사항

3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 관련 의료법 위반 / 행정적 제재

● 행정적 제재

- ▷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제2항)
- ▷ 개설 허가 취소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IV. 주의 사항

(참고)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 관련 의료법 위반 / 벌칙 조항

● 벌칙

- ▷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의료법 제88조 제1호)
- ▷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사항 위반행위는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 (의료법 제89조 제1호)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올바른 의료광고로
의료인과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블로그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심의 가이드북

해당 책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5.09.25.

발행인 : 대한한의사협회

발행처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 의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02-2657-5030, 5037, 5039

<https://ad.akom.org>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